

한의과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규정

제정 2016.08.30.

1차 개정 2018.11.23.

제1조(명칭) 위원회는 한의과대학교육과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적 지식과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의학 교과목 및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운영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증진, 교양교육의 내실화 추진, 졸업생의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3조(소재)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8.11.23)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3)

1.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2. 한의학 교과목 표준교육안 및 평가방법 개발
3. 한의학 교과목 교재 개발
4. 한의학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과학과장 및 학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임교원, 산업체인사 및 학생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3)

③ 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7조(연구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지원) 위원회는 소정의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671, 2016.08.30)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581, 2018.11.23)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